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1428
- 제 출 자 : 김희걸 의원(외 16명)
- 제 출 일 : 2016년 10월 21일
- 회 부 일 : 2016년 10월 24일

2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매각가능 항목 중 일부 항목의 기준일이 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일과 불일치하여 이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38조제1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.(안 제38조제1호)
- 나. 제38조제4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.(안 제38조제4호)
- 다. 제38조제8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.(안 제38조제8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(행정자치부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신. 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(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,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)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부 항

목의 매각요건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(안 제38조)하려는 것인바,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이루고 법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, 당해 개정 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.

- 집행부(재무국-자산관리과)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('16. 7.12) 과 시행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- ※ 개정배경 : 특정건축물¹⁾ 정리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적용시기를 2003년에서 2012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중 6개(부산, 인천, 울산, 강원도, 충청남도, 전라남도)광역자치단체가 개정을 완료한 상황임(참고자료①)

<관련 조문>

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40조(처분의 방법)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.

14.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,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·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가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

나.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

15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(행정자치부 고시 2016-30호, '16.8.3)

제16조(수의매각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
1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,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.

2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- ----- ----- -----.

1) 특정건축물은 일정면적 이하의 주거용건물에 한하여 건축허가 후 준공절차 없이 사용하거나 건축허가 없이 축조한 건물을 양성화된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함.

연번	시도 명칭	점유시작 기준일	개정여부	비고(개정일)
1	서울특별시	2003년 12월 31일	추진 중	
2	부산광역시	2012년 12월 31일	개정완료	2016.01.01.
3	대구광역시	2003년 12월 31일	검토 중	
4	인천광역시	2012년 12월 31일	개정완료	2016.9.29.
5	광주광역시	2003년 12월 31일	검토 중	
6	대전광역시	1989년 1월 24일	검토 중	
7	울산광역시	2012년 12월 31일	개정완료	2015.12.31.
8	세종특별자치시	1989년 1월 24일	검토 중	
9	경기도	2003년 12월 31일	검토 중	
10	강원도	2012년 12월 31일	개정완료	2015.11.6.
11	충청북도	1989년 1월 24일	검토 중	
12	충청남도	2012년 12월 31일	개정완료	2016.2.22.
13	전라북도	2003년 12월 31일	검토 중	
14	전라남도	2012년 12월 31일	개정완료	2015.11.16.
15	경상북도	2003년 12월 31일	검토 중	
16	경상남도	2003년 12월 31일	검토 중	
17	제주특별자치도	2003년 12월 31일	검토 중	

연번	자치구	특정건축물	비고
합계	계	948	
1	종로구	120	
2	중구	58	
3	용산구	70	
4	성동구	40	
5	광진구	15	
6	동대문구	115	
7	중랑구	44	
8	성북구	60	
9	강북구	82	
10	도봉구	3	
11	노원구	9	
12	은평구	31	
13	서대문구	19	
14	마포구	74	
15	양천구	7	
16	강서구	8	
17	구로구	49	
18	금천구	16	
19	영등포구	30	
20	동작구	70	
21	관악구	8	
22	서초구	1	
23	강남구	1	
24	송파구	7	
25	강동구	11	